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별기고 | 수형자 자녀의 인권
- 18 • 가정폭력상담실
- 20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㉗
- 22 • 어떻게 할까요
- 24 • 결혼과 인생(210) 영화이야기
벤 이즈 백 _ 김용언
- 26 • 좋은 책
당신이 남긴 증오
- 27 • 현장실습 소감문
- 31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4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누하카페 뒷마당 무늬동글레 2020〉

이 달의 메시지



지역사회 법률구조 사업의 안정과 확산을 위한 새 길을 열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해 말부터 몇 차례 <가정상담>의 이 지면과 소식란을 통해 상담소에서 시작된 지역사회에서의 법률구조 사업의 역사와 그 길을 함께해 왔으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할 상황에 놓였던 상담소와 상담소의 지부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기 30여 년 전부터 번민하는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해온 상담소가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각 지역사회에서도 법률구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한 마음들과 모여 시작한 것이 상담소와 상담소 지부의 역사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법률구조 사업에 뜻을 둔 이들이 지부설립의 의지를 모으면 상담소는 지부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담위원회에 대한 상담 및 사무 전반에 대한 실습을 비롯해 그간 축적해 놓았던 법률구조 사업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면서 각 지부들이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상의 변화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기도 해서 상담소가 앞장서 이끌어낸 1987년 법률구조법의 제정은 법률구조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상담소는 이 법에 의거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법인인이 되었으나 법이 제정되면서 상담소의 지부는 지부로써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소가 민간단체로서 받는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으

로는 조직과 예산을 포함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지부들까지 끌어안을 여력은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상담소와 각 지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각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왔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민간단체의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 사업이 유지되도록 도와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법 제정 이후 위법성 논란이 인다면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으나 민간단체라는 태생적 한계와 현실의 무게로 인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부 운영자들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악화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상담소의 본 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상담소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길게는 40여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함께해온 지부도 있고 그간의 역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 두 달의 시간, 몇 사람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시간과 내 외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거치고 몇 차례 논의를 거듭하여 도달한 고심어린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더 이상은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는다'는 저의 신념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가사 안 되는 길도 있고 해서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상담소의 역사가 없는 길을 만들며 온 것과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지금은 한국전쟁 직후도 아니고 법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 동안 주무부서의 양해를 믿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구조 사업을 펼치는 가정법률전문 상담기관으로써 늦은 감이 있으나 법과 제도에 따라야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을 결단함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 각오하고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상담소로서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 노력

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각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소로서도 전국 단위의 지부를 잃는 것은 엄청난 상실이며 70여년을 바라보는 상담소 역사에도 적지 않은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언제까지 편법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보다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지부들의 요청에 의해 상담소 지부라는 명칭의 사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면서 그 동안 각 지부는 내부적 정리를 끝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무협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담소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소에 업무협약을 요청한 지부는 모두 17곳입니다. 상담소 지부들과 업무협약이 진행되고 구체화된다면 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법률구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법률구조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지역의 법률구조 사업에 한 축을 담당해 온 지부들의 헌신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법적 제도적 한계 없이 지부들이 새로운 이름 아래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부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법률구조 사업이 위축되어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가족구성원들이 더욱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지 크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새로운 관계설정이 현실화되어 과거 지부들이 상담소와 새로운 관계로 더욱 든든하게 맺어져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이 더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사회 번민하는 이웃들과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각 지부들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의 자식이어서 처벌받는 아이들

- 수용자자녀 인권상황과 사회적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신 연 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수용자자녀,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 II. 수용자자녀 규모와 인권상황 : 얼마나 되며, 무슨 일을 겪고 있을까?
- III. 수용자자녀 지원효과 : 왜 지원해야 할까?
- IV. 수용자자녀 지원원칙 : 어떻게 도와야 할까?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 수용자자녀,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단지 부모가 교도소 수용자이기 때문인데, 연간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법집행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바로 수용자자녀들이다. 수용자자녀를 제2의 피해자라고 하며, 이들이 겪는 고통을 숨겨진 형벌(hidden sentence)이라 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잊혀진 피해자(invisible victims)라 한다. 이 아이들은 범죄문제로 인해 명백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제2의 피해자)이고,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잊혀진 피해자)이며, 비록 법이 애초에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선고도 없는 형벌(숨겨진 형벌)을 부모와 함께 받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인간존엄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배제를 거부하는 평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부모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면, 나아가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면 평등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흔한 오해는 교도소는 가정도 자녀들도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사회의 아주 예외적인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아동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정 내지는 사회성원 다수의 이익을 명분삼아 수용자자녀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나아가 범죄인과 가족을 동일시하여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범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수용자자녀들은 법적·정책적·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법적으로 특정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지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다만 빈곤취약가정 아동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을 따름이다. 한편 사회문화적으로는 범죄인 자녀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적 배제를 당하고 있다. 법집행과 공권력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이지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부모로부터의 보호를 박탈당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에서도 멀어져 있다.

단지 부모가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른바 ‘누구의 자녀’라는 이유로 닥치는 어려움은 너무나 많다.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이 어린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가정을 흔들게 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고한 아이들이 실상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

본고는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의 실상과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글을 전개하면서 수용자자녀들은 얼마나 되며, 아동인권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왜 필요하고 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법적 지원방안에 관한 소견도 제시하고자 한다.

II. 수용자자녀 규모와 인권상황

- 얼마나 되며, 무슨 일을 겪고 있을까? -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인구현황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용자자녀들을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아동인구로 보았다. 이에 2017년 이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고자 전국 53개 교정기관 수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¹⁾ 아래의 <표 1>은 당시 조사한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용자 중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녀를 한 명 이상 두고 있는 수용자는 25% 정도이다(다른 연구에서는 31%로 보고됨). 그리고 이들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수는 평균 1.5명이다. 부모의 수용기간, 즉 수용자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1년

<표 1> 수용자자녀 및 수용된 부모 현황에 관한 기초정보

	수용자자녀 현황	수용자자녀 부모 현황
일일평균 상존인원	22,000명	① 미성년자녀율 25%~30%
연간 인원	32,000명	② 미성년자녀수 평균 약1.5명
연간 추가되는 인원	18,000명	③ 부모의 평균연령
누적인구 추계	2020년 32,000 명 →	- 수용된 아버지 : 43.17세
① 2020년을 첫해로 가정	2021년 50,000 명 →	- 수용된 어머니 : 41.06세
② 매 해 18,000명씩 추가	2022년 68,000 명 →	④ 부모의 수용기간 1년 이내
	2023년 86,000 명 →	- 수용된 아버지 : 약 50%
	2024년 104,000 명	- 수용된 어머니 : 약 60%

※ 수용자자녀 연령 규정: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 통계자료 출처: 신연희 외(2017), 신연희(2016)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수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42,354명의 수용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조사당시인 2017년 일일평균 인원 약 53,000여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수용자의 80.0%에 해당하는 인구였다.

이내인 경우가 절반이상이다.

한편 수용자자녀의 인구규모를 보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일평균 22,000명이 상존해 있으며, 연간 32,000명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매년 18,000명이 새롭게 수용자자녀 인구에 더해지기 때문에 누적인구는 해를 거듭 할 수록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2020년을 수용자자녀수를 계산하는 원년으로 가정한다면 <표 1>에서 처럼 2020년 32,000명, 2021년 50,000명 2022년 68,000명, 2023년 86,000명, 그리고 2024년 104,000명으로 5년 만에 10만 명 이상이 된다. 따라서 성장기 동안 부모가 교도소에 간적이 있는 아동의 수는 상당히 많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일찍이 수용자자녀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수용자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당연령 청소년인구의 2.3%를 차지할 만큼 수용자자녀 인구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Glaze & Maruschak, 2010). 미국의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18세미만 자녀의 2.7백만이 현재 부모가 수용되어 있고, 한번 이상 부모의 수용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5백만 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Peterson et. al., 2019).

2.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인권관점에서 본 수용자자녀들은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 즉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아동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 부모의 교도소 수용과 함께 생존과 건전한 성장의 토대가 되는 가정이 훼손되어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보호해 줄 부모를 상실하여 보호권을 상실하며, 부모의 보살핌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발달권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모가 교도소에 있지만 자활능력이 없는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수용자자녀들은 우리사회의 다른 소외계층아동과 다를 바가 없지만 단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이 수용자자녀들에 대해 우리사회가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신연희 외, 2017).

가. 수용자자녀들의 위기적 상황²⁾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수용자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녀와 가족들에게 주는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는데 가족들은 생계 부양자의 상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옥바라지, 보호자의 상실, 가장 친근한 사람과의 이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① 경제적 어려움

미결수용자의 10명 중 9명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초기수용자의 가족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절반이상의 수용자는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전담해 오다 수용되었으므로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생계수단이 끊긴 상태라고 할 수 있다(신연희, 2016). 수용자가정의 빈곤율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대상자의 비율이 연구에 따라 16.5%(이동훈 외, 2014: 47), 11.7%(신연희 외, 2017: 55), 15.5%(권수진 · 신연희, 2019: 104)로 각각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3.4%인 것과 비교할 때 수용자가정의 수급비율은 이보다 서너 배 혹은 그 이상 높은 상황이다.

● 빈곤으로 인한 수용자자녀들의 어려움

수급자인데 학원비까지 할머니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깃집에서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레슨 받으러 가야해서 이모한테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돈을 많이 못내는 집이 어려운 학생을 봐주신다고 이모가 알아봐서 간거거든요. 그래서 인천까지 1시간 지하철

2) 수용자자녀들의 상황에 따라 소개된 사례는 상기하였던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심층면접 결과에서 인용한 것이다(신연희 외, 2017: 98-115).

타고 갔는데 딱 5분 봐주고는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니가 낸 돈 만큼만 지도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울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서럽고 그랬죠. (사례 : 21세, 여, 재수생)

어릴 땐 아빠가 거기 계신 것도 힘들고 집이 가난한 것도, 할머니랑 사는 것도 힘들고... 힘들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죠. 근데 할머니가 계시니까... 하... 어린 마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고 울다가 울다가... 할머니가 ‘네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하고 절 붙잡고 우시고 아버지 미워하시고 그러면 가슴이 아팠죠. (사례 : 27세, 남, 사회복지사)

② 보호자·양육자의 불안정

수용이 초래한 또 다른 문제는 한부모와 살게 되고 때로는 양육자가 바뀌기도 한다. 나아가 어린자녀들이 교도소에 수용된 부모는 물론이고 남은 부모와도 헤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용자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인 보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부모수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화된다. 수용자자녀들은 모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며, 모자가정, 조손가정의 형태만 다를 뿐 한부모가정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물론이고 여기에 수용자자녀라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더해지게 된다.

● 양육자의 변경과 불안정

갑자기 아빠가 없어지시고 삼촌이 왔는데 삼촌이 청소 안 한다고 때리고 말대꾸 한다고 때리고... 근데 누나까지 때리니까 누나가 집에 안 들어 왔고 동생도 삼촌 피해서 도망갔어요. 저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저를 잠을 안 재우고 새벽 3시까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저는 때리면 그냥 맞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부터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계속 참다가 가 출했고 센터선생님이 알아봐줘서 그때부터 쉼터로 전전하게 된 거예요. 누나가 가출하니까 저하고 동생 놔두고 왜 먼저 가출했나 처음에는 좀 밉기도 했는데 쉼터에서 사니까 누나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게 서럽고...

그래서 누나랑 연락이 됐는데 누나가 안 아프고 잘 지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냥 화가 다 풀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우리끼리 살자’ 그랬죠. (사례 : 17세, 남, 고등학생 2학년)

③ 가정해체와 보호자 상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가정 중 법률혼이 해체된 경우는 남녀가 각각 53.3%와 62.5%이다. 절반이상이 혼인관계가 해체되었는데, 이러한 실정은 여성수용자들이 더욱 심각하다. 이를 반영하여 여성수용자자녀들은 남아있는 한쪽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51.5%(남자수용자자녀 78.5%)로서 여성수용자자녀들의 절반정도가 양부모 모두와 헤어져 살고 있다(신연희, 2016).

● 가정해체와 부적절한 보호자

처음에는 엄마랑 살다가 다시 아빠한테 와서 아빠랑 새엄마랑 살다가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신 후에는 새엄마랑 살다가 그 다음엔 할머니랑 살다가 그 다음에 시댁로 갔다가 다시 할머니 집에 왔다가 지금은 혼자 있고... 맨날 혼자 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었으면 힘든 시기도 안 찾아왔을 테고 하는 바람이 있죠. (사례 : 16세, 남, 고등학생 1학년)

부모님 이혼하시고 처음에는 엄마랑 살다가 엄마가 재혼하니까 아빠한테 가서 살라고 해서 거의 버려진 건데 아빠한테 오니까 좀 살만해졌다 그러니까 사고가 딱 났단 말이에요. 단기쉼터에 있다가 수녀님이 다시 새로운 쉼터로 가야 된다고 해서 추천해주셨는데 거기 가서 형들에게 또 다른 구타를 당하고 시달림을 받게 된 거예요. 가족이 그림고 집이 그리워서 세상을 원망했어요. 단기쉼터에 있던 수녀님이 여기 좋다고 해서 왔는데 수녀님한테 너무 배신감이 들고 나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집이 생각났죠. (사례 : 17세, 남, 고등학생 2학년)

④ 자녀들의 심리적 상처

수용자자녀들의 심리적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문제이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심리적으로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비난을 자신도 공유함으로써 자기비하, 위축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부모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부모의 수감이 자기잘못인 것 같은 자책감 등 심리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박선영·신연희, 2012: 216). 청소년기 자녀들은 범죄인 자녀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여기에 부모가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그 충격은 보다 심각한데, 국내 조사에 의하면 수형자 자녀의 12%(전영실 외, 2007: 90), 또는 6.5%(신연희 외, 2017: 58)로 보고되었다. 심리적 문제의 주된 증상으로는, 부모가 수용된 후에 “아이가 말이 없어졌다”,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불면증, 우울증을 보인다” 등으로 나타났다(전영실 외, 2007: 128).

●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아침 일찍 자고 있는데 누가 아빠를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막 옷 입고 그러는데 제가 왜 왔냐고 하니깐 처음엔 말을 안 해요. 아빠가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금방 옮겨라고 우리한테 그카고 경찰차를 탔는데 그분들이 그 경찰 동료분이 사실 애들도 알건 다 알아야 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다 카면서 ‘느그 아빠 잡혀간다’. 그 피해자 누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신고해서 성폭행으로 간다’ 그 카는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누나랑 들었는데 어안이 병병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놀래서 누나랑 3일 동안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사례 : 17세, 남, 고등학생 2학년)

동네가 조그마하니까 동네사람들이 아빠얘기를 다 알죠. 근데 다 아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너는 너희 아빠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서 꼭 아는 척을 해요.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싫죠. 저도 뭐 아빠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리고 이제 아빠가 들어간 거를 친구 부모님들이 아시니까 부모님 거기 들어간 애랑 같이 놀지 마라 이래서... 아빠가 원망스럽고 밉지만 그래도 아빠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좋게 들을 수는 없었어요. (사례 : 27세, 남, 사회복지사)

⑤ 부적응과 문제행동

비행은 자녀들이 처해있는 취약한 상황이 원인이다. 자원이 부족하거나 실업자, 빈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부모의 교도소 수용을 경험한 자녀 열 명 중 한명은 부모의 전철을 밟고 있는 실정이어서 범죄가 세대를 통해 이전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신연희·이백철, 2008:72). 한편 교도소 수형자들의 13.2%는 가족 중에 교도소에 입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수용자 가정의 어려움은 사회적비용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영실 외, 2007: 65).

● 부적응과 문제행동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안 좋아졌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집도 지하로 내려가고 그래서 엄마가 주부셨는데 일하게 되시고 예전하고 완전 달라지면서 학교도 잘 안 나가게 되었어요. 형이랑 번갈아 가면서 동생 어린이집에 아침에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리고 오는 거 해야 하고 집에서 밥도 차려 먹어야 하는데 귀찮고 형이랑 안한다고 싸우고... 학교 안다니고 놀면서 계속 빠지니까 못 가게 되고 놀다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게 되고 막 술먹다보니까 가출하고 싶어지고 재판까지 오고 막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엄마가 아빠도 그런데 너까지 왜 이렇게 됐냐고 우시는데.. 아빠가 안계셨다면 이렇게 되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례 : 17세, 남, 고등학생 1학년)

⑥ 부모와의 단절

수용된 부모와 자녀가 접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0%가량이었고(신연희 외, 2017: 59), 부모의 수용초기에 수용 사실을 자녀가 모른다는 응답은 60%이상으로 나타나(신연희, 2016), 수용자와 자녀 간 관계의 단절은 상당히 심각하다.

● 부모-자녀 교류 단절

아빠가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걱정이 되어서 불안했죠.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지방에 출장 갔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왜 전화도 못하나 무슨 사고 당하셨나 막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제가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비밀이라면서 교도소에 계신걸 알려주셨죠.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되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절 버리지 않으셨다는 안도감이랄까. (사례 : 17세, 남, 고등학교 1학년)

옛날에는 아빠가 전주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고모가 안 가르쳐주고... 아빠가 왜 들어가셨는지도 몰라요. 애기를 안 해주셔서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면회 가고 싶어도 고모가 니네 집 일은 신경 안쓴다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를 수도 없고... (사례 : 16세, 남, 고등학교 1학년)

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수용자자녀들은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UN아동권리협약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수용사실을 통보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UN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면접권).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³⁾ <표 2>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상황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이다(신연희, 2019). <표 3>은 권리유형별로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침해 상황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서 상기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이다(신연희 외, 2017: 98-99).

<표 2> 아동의 기본권과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상황

권리영역	아동의 기본권 내용	수용자자녀 권리상황
생존권	경제적 생활, 주거, 영양, 보건, 돌봄, 긴급지원	- 경제적 빈곤 - 부모 수용초기의 자녀들이 가장 위기적
발달권	건강, 학교적응, 병원치료, 문화생활, 자녀상담, 멘토링, 자녀캠프	- 체포장면 목격(7%)으로 심리적 손상 - 체포를 목격한 모든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심리치료 및 자녀상담 필요 - 부모의 수용사실(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평균 40%)을 알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정서적 지원필요
보호권	보호아동발굴, 보호체계연계, 낙인방지, 부모교육, 구금최소화 및 대안적 형사제재	- 친생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함(평균 25%) - 부모의 수용이 길어질수록 부모의 보호권에서 벗어나게 됨. - 보호아동 발견 및 아동보호체계 연계 필요함.
참여권	부모에 관한 정보제공, 자신과 관련된 일에 알권리, 접견여부 의사반영, 거주지와 양육자선택에서 자녀 의사반영	-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름(평균 60%) - 자녀의 진정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매뉴얼 필요
면접권	부모와 정기적 접견, 접견활성화 방안들	- 부모와 접견한 적이 없음(66%) - 수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접견경험이 상승하고 있어서 접견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

3) 국제협약인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1989년 채택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제조약이다.

〈표 3〉 사례로 본 수용자자녀 인권 상황

권리유형	내 용
생존권	건강한 보호자 부재, 안전하게 살아할 공간이 없어짐, 경제적 궁핍과 냉혹한 현실, 자살까지 생각함
	“아빠가 경찰에 끌려간 순간 앞으로 어떻게 먹고사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죽고 싶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아무데서 안도와주니 가족들 다 같이 죽자고 할머니가 맨날 우시고…” “편의점, 배달대행, 서빙, 음식점 주방일.. 지금까지 세상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100만원 벌어서 주유비랑 오토바이 대여비로 100만원 나갔어요” “살 집이 없어서 찜질방 전전했는데 너무 너무 끔찍 했어요”
보호권	집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시설로 떠돌아다니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보살핌과 위로, 체포과정 목격 그리고 충격
	“일시 쉼터 있다가 단기쉼터서 살다가 다시 장기쉼터에 갔는데 형들이 때리고...누나랑 살고 있어서 연락했죠 우리끼리 살자고…” “시설 식당이 아닌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형제들이랑 살고 싶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살게 됐고, 고모 덕분에 대학가게 됐죠” “경찰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면서 너도 알건 알아야 한다며 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말해줬어요, 3일 밤낮을 잠을 못 잤어요.”
발달권	비행의길, 학업중단과 진로에 대한 막막함,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위기, 친척과 이웃의 차가운 시선, 지역사회 서비스의 도움
	“교도소에 간 아빠 대신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제가 그때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빠 그렇게 되고 엄마는 밤마다 일하고 공부도 싫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가출하고 술먹고 그랬죠”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 바로 그런 심정을 말하는 거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너는 니 부모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해서 수치스러웠어요” “쉼터 선생님이 그냥 너는 니 갈길을 가라”고 해 준 말이 제일로 도움이 되었어요, “센터 선생님이 없었으면 집에서 이렇게 못 있고 취미생활도 못하죠, 밴드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나고요”
참여권	수감사실에 대한 정보 부재, 멀고 먼 접견의 길 그리고 아쉬움
	“외국 갔다고 하셔서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듣고는 아빠한테 배신감이 들었죠” “아빠가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안 말해주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계속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전화해도 안락도 안 되고 엄마가 날 버리고 가버렸는데 아빠까지 날 버리는 건가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았죠” “유리창 같은데서 말고 아빠 손 좀 잡아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학생증에 사진이 없다고 면회도 안 시켜주고.. 주민등록등본 놓고 왔다고 안된다고 하고 2시간 걸려서 갔는데… 막 울었는데도 안된다고 하고”

※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17년)에서 수용자 자녀 1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이다(신연희 외, 2017: 98-99)

III. 수용자자녀 지원효과

- 왜 지원해야 할까?

1. 범죄문제 완화에 기여

“가족은 범죄문제 해결의 가장 강력한 해답이다.”

범죄인을 처벌하고,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범예방을 통해 사회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가족은 수용생활과 출소 후 사회정책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가족과의 유대는 구금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적응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요인이 되고, 나아가 재결합을 준비할 수 있는 동기를 자극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구금을 계기로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정이 해체된다면 교정시설 안에서의 교화효과와 출소 후의 사회응응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남상철·신연희, 2002).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은 출소 후 사회정착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인데 건강한 가족, 안정적인 가족은 바로 도울 수 있는 자원이다. 재범예방에 관한 가족의 역할은 출소자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는데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소 후 적응기간 동안의 재정적·정서적 지원은 가족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자원은 출소 후에 갑자기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수용된 동안 잘 관리되고 유지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수용자자녀와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재범예방의 효과로 이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범죄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회에 환원된다. 이런 점에서 수용자자녀와 가족은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가용자원이며 강력한 해답이다.

2. 취약한 아동의 인권보장

“무고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용자자녀와 가족들의 상황에 주목하게 되면 가족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남편의 수감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만약 수용자자녀와 자녀들의 가정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즉 사회통제 수단 내지는 범죄통제정책의 자원으로서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위기에 처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할 수 있다. 수용자자녀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삶을 우선적으로 보려는 관점이다.

범죄인 처벌과 교도소 수용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는 자녀들이다. 자녀들은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탓에 정서적 손상을 겪게 되고, 거주지나 학교의 전학 또는 양육자의 변경 등 불안정한 양육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정서적 문제 및 학업성취력이 떨어지고 심하게는 문제행동에 이르게도 된다. 부모의 구금 후 자녀들에게 닥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적당한 양육자가 없거나 부적절하며 극심한 가난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자녀들은 살던 집을 떠나 조부모, 또는 친척집으로 가게 되고 어른의 보호없이 자녀들끼리만 살게도 된다. 수용자자녀들을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하는 이유이며, 이처럼 취약한 아동들을 보살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부모의 수용으로 초래된 자녀들의 문제는 비록 법집행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법집행의 결과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수용자자녀들은 법집행이라는 공권력의 피해자이다. 무고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은 사회적 책무이다.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어 가정에서 보호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와 사회에 의해 빼앗긴 수용자자녀들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취약아동이며, 따라서 취약아동을 만든 사회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박선영·신연희, 2012: 148).

IV. 수용자자녀 지원 원칙

- 어떻게 도와야 할까?

1. 관련 제도와 규정 현황

가. UN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① UN 아동권리협약

수용자자녀의 권리보장은 유엔이 1989년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에 근거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 안 된다(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부모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권리가 있다(제9조)고 명시하고 있다.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제4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 9. 30.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하였다. 수용자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며,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 같은 권리가 있고, 각 회원국은 “수용자자녀의 권리는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법집행, 교도소, 사법절차 등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신연희 외, 2017: 208-210).

나. 수용자자녀 권리장전

(San Francisco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artnership: A Bill of Rights)⁴⁾

샌프란시스코 수용자자녀 파트너십(San Francisco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artnership)에서는 수용자자녀 권리장전을 제정(2003년)하였다.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 수용자자녀에 대한 정부와 민간 운영자들의 실천 지침이 되고 있으며 대중교육에도 사용되고 있다. 2005년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수용자자녀 이슈에 관한 일반권고사항〉(2011.9.30.)

- 주양육자에게 형을 선고할 경우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비구금조치를 고려할 것.
-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자녀 권리침해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할 것.
- 부모와 함께 성장하고 관계를 유지할 권리 : 부모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족생활과 사회적 환경을 영위할 권리, 부모와 함께 수용시설에서 지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 수용된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정기적으로 수용자 부모와 직접 만나고 관계를 유지할 권리 보장.
- 낙인으로부터 보호: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책임과 한계 설정할 것.
- 재정에서 아동이익 최우선 고려: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박탈하는 결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4) 신연희 외, 2017.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아동복지실천회 세움, pp.171-172.

〈수용자자녀 권리장전〉

1. 나는 부모가 체포될 때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체포 수칙을 계발하여야 한다.
 -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이 놀라지 않도록 사이렌과 경광등의 사용을 피한다.
 - 체포되는 자가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부모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가 없는 곳에서 수갑을 채운다.
 - 체포되는 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다른 경찰관이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충분한 설명을 한다.
 - 아동과 그 양육자에게 체포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 체포된 자가 어디에 있는지,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등을 알린다.
2. 나는 나에 관한 결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용자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관의 직원을 양성한다.
 - 진실을 이야기한다.
 - 귀 기울여 듣는다.
3. 나는 나의 부모에 관한 결정에 있어 나의 존재가 고려될 권리가 있다.
 - 자녀와 가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형량을 검토한다.
 - 부모의 체포가 가족 보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판결 전 조사 보고서(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s)에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4. 나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양육자를 지원함으로써 수용자자녀를 지원한다.
 - 후견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5. 나는 부모와 대화하고,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다.
 - 아동 친화적이고, 부모-자녀간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접견 환경을 마련한다.
 - 수용자를 교도소에 배치할 때 가족이나 자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는 부모-자녀 간 연락이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6. 나는 부모의 수용을 겪으면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수용자자녀 문제를 다루는 직원이 수용자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수용자자녀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심리치료사, 상담원, 멘토 등을 제공한다.
 - 연방/주 교정 예산의 5%를 수용자 가족 지원에 배정한다.
7. 나는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심판·비난·낙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같은 상황에 처한 수용자자녀들이 서로 교류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부모가 수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한다.
8. 나는 부모와 평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ASFA의 개정을 검토한다.
 - 구치소와 교도소에 가족전담 직원을 배치한다.
 - 수용자의 사회 재통합을 지원한다.
 - 재활과 (수용)대안책에 초점을 맞춘다.

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신연희 외, 2017)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9년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를 하였다(2019.5.30.).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형사사법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⁵⁾

〈형사사법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2019.5.30.

- 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 구속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등을 권고
- ② 대법원장에게,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 활성화를 권고
- ③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견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및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 활성화 등을 권고.

2. 법적 보호방안

이하에서는 수용자자녀에 법적보호가 촉진되기를 기대하면서,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자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가. 가사소송과정에서

- 양육자 지정 시 수용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수용된 동안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방법(예: 가정위탁제도 등) 등을 통해 양육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형사소송 과정에서

- 판결 전 가정환경조사에서 미성년자녀의 상황을 조사하여 수용자가 유일한 양육자이거나 양육자가 부적절한 경우 보호조치를 위해 지자체장에게 통보
- 수용된 부모가 유일한 양육자이고 영아일 때 수용자의 양육권 보장(교도소 내 유아양육) 적극적 적용
-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아동이 있는지에 관한 환경적 요인을 조사하고 양형에 반영.

다. 아동복지법

- 보호아동 유형에 수용자자녀 명시
- 가정위탁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위탁가정을 통해 수용자자녀 지원
: 유일한 양육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양육자가 부적절할 때

남녀 수용자 모두 절반이상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자녀들과 분리되는 만큼 부모가 수용된 동안 한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자녀들끼리 있거나 양육자가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리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혹은 일반가정위탁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라. 한부모가정지원법

- 한부모 가정의 유일한 양육자가 수감된 후 지자체를 통해 방치된 자녀들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에 대한 근거조항 명시

5) 국가인권위원회의 “형사사법단계에서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의 상세내용 전문은 아래의 URL참조: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category/decisionView?menuid=001010&id=4567>

마. 청소년복지지원법

- 위기청소년 유형에 수용자자녀를 명시하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V. 나가는 말

이상의 논의에서 수용자 자녀는 인구의 규모라는 양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헌법가치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그것이 가져 올 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우리 국가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용자 자녀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회복차원에서의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국가가 선진화되고 정부정책의 품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마저 통찰하고 정책 문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량이 필요하다. 역대정부가 사회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적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반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수용자의 자녀문제와 같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슈는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의 근대적 칸막이 정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 수용자 자녀문제는 문제 그 자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능별로 구분된 정부부처의 분절된 정책 결정틀로서는 통합적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정부내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상위의사결정구조를 통해 관심이 환기되어야 하고, 국회에서의 제도화 및 사법기관에서의 다각적인 노력도 절실히 보인다.

수용자 자녀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들 또한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고, 구성원들이다. 수용자자녀문제는 수용자들의 건전한 수용생활과도 관련이 있다. 수용자들의 재범을 막고 우리사회가 더욱 건전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그것이 곧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고,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토대이자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권수진 · 신연희, 「수용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 남상철 · 신연희, “재소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정책의 방향”, 「교정연구」, 제15호: 99-124, 2002.
- 박선영 · 신연희,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신연희 · 강정은 · 박선영 · 여연심 · 이경림 · 최경옥,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2017.
- 신연희, “부모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0권 제1호: 129-158, 2016.
- 신연희, “수용자 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61-296, 2019.
- 신연희 · 이백철, 「여자비행청소년의 성적학대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8.
- 이동훈 · 신연희 · 최관 · 방기연,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 및 중장기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4.
- 전영실 · 신연희 · 김영식,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법무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Glaze, L. E. & Maruschak, L. M., “Parents in Prison and Their Minor Childre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BJS(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0.
- Peterson, B., Cramer, L., Kurs, E., and Fontaine, J., Toolkit for Developing Family-Focused Jail Program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2015.



가정폭력상담실

행위자 상담



부부 모두 행위자이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상담에 참여하면서

결혼 생활의 만족도 높아져

사건번호 2018버2*** 폭행/
2018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교육강좌 2회,
음주문제상담 3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3회
부부상담 4회, 부부 교육강좌 3회, 부부집단상담 6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9. 3. 14. ~ 2019. 9. 2.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8년 되었으며 부부사이에 1남(7세)이 있다. 2018년 9월 사건당일 옆으로 다가오는 남편에게 오지 말라며 아내가 남편의 목을 밀친 것을 이유로 남편이 침대 옆드려있는 아내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아내는 이에 대응하여 남편의 가슴과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부부 쌍방이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아내에 의하면 1년 간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투고 남편이 아내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는 일이 있었는데 청첩장이 나온 후라서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결혼 후 바로 임신이 되어 현재까지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혼 후 남편은 화가 나면 폭언하고 아내를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여 얼굴에 상처가 나고 피도 흘린 일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한 것도 맞대응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부부 모두 술을 좋아하는데, 아내가 술을 마시고 마음속에 쌓인 일을 이야기하면 남편이 싫어해서 술을 마신 후 충동이 잦았다. 남편은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아이가 어려서는 아이도 때렸고 아이 앞에서 부부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 부부는 본 사건 발생 후 2019년 9월까지 1년간 서로 노력하자고 합의하고 노력 중이었다. 초상담에서 확인 결과, 사전 노력의 결과로 부부 모두 술을 마시지 않고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남편은 큰 소리 내지 않고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하기,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격려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웃는 표정 짓기로 정하였다. 부부는 상담 참여 욕구가 높았고 계획한대로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부부집단상담 초기에, 아내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긍정적으로 보

는 방법을 배우고 싶고, 혼자 피해받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고 싶다고 하였다.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은 적이 있었다. 평소 남편은 아내에게 표현을 많이 하는 반면 아내는 다소 무뚝뚝해서 반응을 잘 안하는 편이었다. 아내는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메신저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 표현에 힘이 난다고 하였다. 아내는 과거에는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얘기할 때 “왜 생색을 내지?”라고 생각 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나름대로의 시도가 자 노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잘 대응해주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남편이 아이를 훈육할 때 남편과 싸우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상담이 끝나는 게 아쉽고 그동안 싸우는 일이 너무 많아 결혼을 후회했지만 상담을 받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하였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러한 자리가 시간낭비라고 생각했고, 오는 것도 창피해서 아무 생각 없이 상담에 참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자신이 점점 진실하게 참여하게 되었고 건강한 면역력이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아내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대화거리가 많아졌다고 하였다.

부부 모두 현재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하고 연애시절 감정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2018년 9월부터 1년을 기한으로 혼인유지 여부를 숙고하기로 한지 1년이 되었는데, 부부가 다투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결과를 맺었다. 이들 부부는 이전에는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아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담을 통하여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룰 일이 없다고 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2*** 폭행,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9. 3. 5. ~ 2019. 9. 3.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조선족으로 피해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행위자는 중국 국적이다. 부부 사이에 2남(37세, 31세)이 있는데 모두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다.

2018년 11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양복 옷걸이를 찾는 문제로 시비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두 팔을 잡고 비트는 폭행을 한데 이어,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공업용 셔터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본인의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하여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도 폭력임을 알게 되었다. 부부갈등 원인으로 행위자는 자신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그리고 피해자는 대들고 언성을 높이는 것 등 상호 공격적인 대화법을 꼽았다. 행위자는 사건 후 법적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고쳐야겠다고 깨달았고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담기간 중 실천과제로 큰 소리 내지 않기, 한번 더 참기를 정하였다.

피해자는 주중에는 입주 요양간호를 하고 주말에만 집에 오기에 상담소를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전화상담을 통해 행위자의 변화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행위자가 큰 소리를 내고 거친 말투를 쓰는 것이 갈등원인이었는데 문제행동이 개선되었고 지금처럼만 지내면 좋겠다고 하였다.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이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

제2차 가족법개정(1963~1977) ②

촉진회는 이러한 10개 요강에 따라 독자적 개정 법안을 만들어 각계에 발송했다. 법안작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는 김주수·김용한·박병호·이근식 교수와 이태영 소장이 있었다. 한편 여성 국회의원을 초청, 개정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작성된 개정안을 여성 국회의원 대표 이숙중 씨에게 전달하면서 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1974년 9월 30일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회장인 유정희의 이숙중 의원 외 19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내용은 촉진회가 마련한 법안 내용 중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불혼제도 폐지를 삭제한 수정법안이어서 여성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사실을 놓고 촉진회 각 단체대표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져 수정안을 철회하느냐, 추진하느냐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원칙론과 현실론의 대립 끝에 11월 6일 회의에서 이숙중 회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일단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한 여성계의 성토가 높아지고 촉진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단체들이 탈퇴 불사로 철회를 요구하자 다시 12월 2일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촉진회는 이숙중 회장의 수



▲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안 제출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자중지란을 겪은 후에 12월 3일 문제의 수정안을 철회함으로써 사태를 간신히 수습하였다. 이러한 일들로 해서 가족법 개정안 원안은 해를 넘겨 이듬해인 1975년 4월 9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가족법개정안은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불혼제도 폐지 내용에 충격을 받은 유림 등의 거센 반발이 일고 국회에서도 남성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은근히 반대하는 분위기에 싸여 개정안은 심의다운 심의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상태였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년 9개월 뒤인 1977년 12월 8일 여당의 당무회의는 계류 중인 가족법 개정안을 12월로 끝나는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되 1)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주제와 동성동본 불혼 조항은 개정하지 않는다. 2) 이혼 때의 재산분배 문제, 상속에 있어 처와 딸의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등 사회적 저항이 적은 일부 조항은 개정한다. 3) 동성동본 사실혼 부부 사이에 이미 태어난 자녀의 입적을 위해 특례법을 만든다는 방침을 갑자기 정했다.

이와 같이 수정 통과된 개정가족법은 당초 촉진회에서 제안한 10개 개정요강 중 대부분이 삭제된 것이었다. 상속 제도의 합리화는 상속분을 약간 수정하는 선에서 통과시켰고, 부모의 친권 공동행사 부분은 일부 수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현행법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 되고 말았으며 동성동본 부부를 구제하는 문제는 한시법을 별도로 개정했

다. 범여성단체가 뭉쳐 벌였던 가족법 개정운동은 이처럼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후 미흡한 결말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77년 말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가 사실상 해체된 뒤 가족법개정운동은 뚜렷한 구심체를 갖지 못한 채 한동안 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던 상담소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가족법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1979년부터 가족법 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가족법 개정이 일부 여성층의 관심사가 아니라 범국민적 염원임을 물적 증거로써 제시하기 위해 펼쳐진 이 운동은 상담소와 대한YWCA연합회가 주도하면서 꺼져 가는 가족법 개정의 열기를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편집부



▲ 가족법 개정 법안 작성 회의



▲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가 작성한 개정안을 이숙종 의원 및 여성 의원에게 전달



▲ 가족법개정청원서 국회 제출



▲ 동성동본불혼제도개정촉진회 총회

어떻게 할까요?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혼사유가 된다

Q 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8월의 징역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파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약혼 해제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04조 제1호). 형법상 형벌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는데(형법 제41조), 그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파혼사유가 된다

Q 약혼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파혼할 수 있나요?

A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약혼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약혼자가 약혼 후 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파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제2호).

● 성병은 파혼사유가 된다

Q 약혼자가 성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다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파혼해도 되나요?

A 약혼자가 성병이 있는 것은 파혼의 사유가 됩니다. 파혼할 의사가 있다면 약혼자에게 그 사실을 이유로 파혼을 통보하면 됩니다(민법 제804조 제3호, 제805조).

● 불치의 정신병은 파혼사유가 된다

Q 중매로 맞선을 보고 선 본 지 한 달 만에 약혼을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서둘러서 약혼을 했는데 약혼 후 남자가 정신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파혼사유가 되나요?

A 약혼 후 약혼자에게 불치의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법적으로 파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04조 제3호). 따라서 귀하는 위의 사실을 이유로 약혼자에게 파혼 통보를 하면 됩니다.

● 약혼자가 타인과 약혼한 것은 파혼사유가 된다

Q 저는 작년에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혼 후 약혼자가 다른 여성과 약혼하였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약혼한 것은 파혼의 사유가 되므로(민법 제804조 제4호) 귀하는 파혼을 통보하고 약혼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5조, 제806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교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지만 여자는 저와 생각이 달랐던지 사건지 몇 개월 뒤에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났습니다. 수개월 후 여자는 제 아이를 출산 했다고 아기를 데려와 저에게 맡기고 다시 떠났습니다. 여자의 말을 믿지 못해 유전자검사를 했더니 아이가 제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 엄마의 무책임에 저는 어떻게든 아이를 저 혼자서라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 뿐 성도 모르는데, 이름도 실명인지 확인도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없고, 아이의 출생연월일만 아는 상황에서 저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혼인 외자의 출생신고는 아이의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아버지가 혼인외자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5조의 제1항, 제57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아버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신청원인에는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정과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와 아이를 보호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아버지와 자녀사이에 부자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유전자검사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첨부합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자녀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2호 제3조).

법원의 결정 후에, 귀하는 출생신고서에 가정법원에서 교부받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은경 상담위원

벤 이즈 백

감독 피터 헤지스

출연 줄리아 로버츠, 루카스 헤지스, 캐서린 뉴튼



파티 준비가 한창이던 크리스마스이브의 오전, 홀리(줄리아 로버츠)는 약물 중독 때문에 재활원에 들어가 있던 아들 벤(루카스 헤지스)의 예고 없는 방문으로 당황한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이 됐기 때문에 의붓아버지 닐과 동생 아이비(캐서린 뉴튼)는 벤의 느닷없는 등장이 반갑지만은 않은데, 홀리는 애써 그를 감싸주며 하루 24시간 동안 벤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노라 약속한다. 하지만 과연 벤이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게 맞는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던 와중, 반려견 폰스가 사라진다. 벤은 과거 패거리들 중 하나가 개를 훔쳐갔을 것 같다며 밤길을 떠나고, 부랴부랴 따라나선 홀리는 아들

의 숨겨진 진짜 얼굴을 목격한다.

〈벤 이즈 백〉은 어느 가족에게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을 따라간다. 이 가족은 평범하지 않다. 아들 벤은 겨우 14살의 나이에 무신경한 의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대량 투여 받은 이후 마약 중독에 빠져들었고, 결국 가족들마저 그로 인해 심각한 위험과 불안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집을 저당 잡혀 비용을 마련한 다음 벤을 재활원에 입원시켰고 현관에는 그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보장치까지 달았다. 가족들은 중독자의 급작스러운 감정변화와 끊임없는 거짓말과 자기정당화를 감당하는 게 너무나 버겁다. 하지만 엄마 홀리만은, 그에 따른 걱정과 불안과 분노까지 감당한 채 아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이 영화의 중요한 지점은 마약에 인생을 내버린 피해자이자 다른 이들까지 그 수렁으로 끌어들인 가해자로서의 벤에게만 감정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벤과 그 또래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미국 사회가 마약에 얼마나 관대한지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는 데 있다. 약국 측은 마약 흡입 후 발작을 일으킨 이들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제품을 파는 것에는 ‘혹시 모를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일회용 주사기 하나를 사겠다는 (그 목적이 너무나 뻔한) 창백한 얼굴의 남



자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마약 딜러 노릇을 하고, 중독에 빠진 학생은 또래 친구들에게 또 다른 중간 딜러가 된다.

극복과 극기 대신 순간적인 쾌락과 손쉬운 위안의 유혹에 흔들리는 건 너무 쉽다. 이 작은 교외 지역 마을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 대충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좁은 커뮤니티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밀이 거래되는지 깨달은 홀리의 허탈한 표정은 중독과 돈이 맞물리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한다. 마약중독에 빠지는 건 정말 쉽지만(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냐는 물론 개인의 자유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과 노력과 큰 비용이 들며 그것 역시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극도로 왜곡된 ‘자유주의’가 어떤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가장 가까운 이들이 그에 대해 치러야 하는 희생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각자의 영혼을 부숴버린다. 사랑만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분노와 거리감. 아들의 과거 행적을 따라가며 개인의 힘으로는 저항하기 힘든 어둠의 핵심을 보아버린 엄마는, 내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면 같은 미소를 장착한 채 성마른 분노를 애써 눌러 담다가 끝내 폭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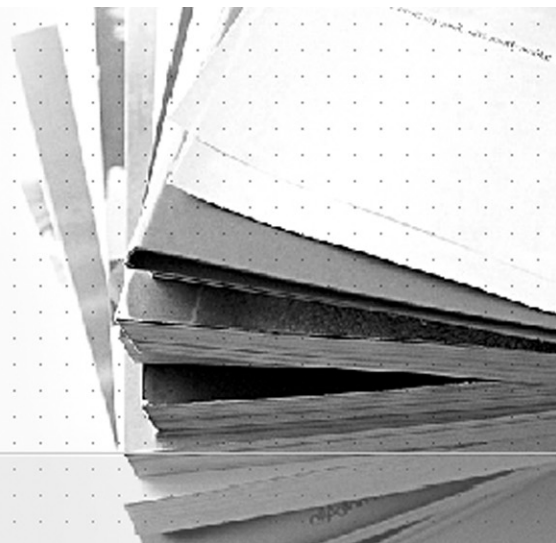
“진짜 내 모습을 알았다면 엄마는 진짜 날 버렸을 거야.” 아들이 이 같은 고백을 할 때 부모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 순간에 던지는 위로와 격려는 그저 허공으로 힘 없이 사라지는 길치레에 불과한 건 아닐까. <벤 이즈 백>은 진진한 아픔을 오랫동안 느끼게 하는 가족 드라마이자, 개인의 ‘자유’를 방치하며 그들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을 비판하는 뛰어난 사회고발 드라마이기도 하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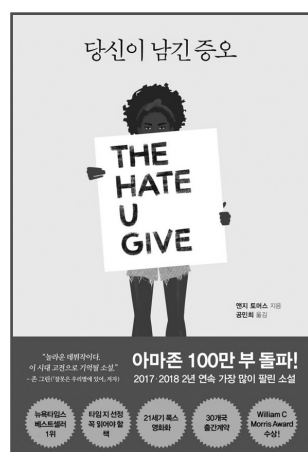


당신이 남긴 증오

앤지 토머스 지음

공민희 옮김

걷는 나무, 2018



국민학교 시절, 주말이면 어린이미사에 다녀와서 혼자 작은 밥상을 받던 기억이 있다. 그 밥상머리에서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초원의 집'이었다. 서부개척시대를 살아가던 가족의 이야기, 그것이 둘째 딸 로라 잉겔스 와일더가 쓴 실화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책이 미국 청소년들의 필독서라는 것은 후에 알게 되었다. 한참 후에 '큰 숲 작은 집'이라는 이야기의 첫 권을 읽었고, 2005년도 썸 드디어 발간된 전집을 사서 읽었다. 이야기는 여전히 흥미롭고 가스 윌리엄즈의 초판본 삽화도 사랑스러웠지만 어쩐지 몇몇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에게 크게 권하지 않고 혼자 읽고만 기억이 있다. 서부로, 서부로 향해 가는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후에 로라의 남편이 된 와일더의 어린 시절을 쓴 '어린 농부' 이야기는 왜 이 이야기가 미국 청소년들의 필독서인지 알게 해주었으나 짭짤한 에피소드로 지나가지만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너무 솔직한 시각이 - 화이트 앵글로 색인에 프로테스탄트인 그들의 시각으로 인디언과 흑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 그들의 깊은 신심과 엇갈리면서 묘한 짜증이 밀려오던 기억이 있다. 세계의 인권수호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의 민낯이랄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아직도 계속 중인 요즘 이 책 『당신이 남긴 증오』를 읽으면서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초원의 집'에 대한 기억까지 소환했다.

이 소설은 작가 앤지 토머스가 대학 졸업반이었던 2009년 무장하지 않은 22세 흑인 청년, 오스카 그랜트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탄생했다. 2009년의 오스카 그랜트가 2020년의 조지 플로이드다. 책의 마지막 장에 1955년부터 2015년까지 7

세부터 37세의 나이로 경찰에 총이나 구타로 숨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기록이 실려 있는데 말 그대로 마음이 서늘해진다.

이야기는 사춘기 10대 소녀인 스타가 파티에 갔다 친구 칼릴이 운전하는 차로 귀가 하던 중 눈앞에서 칼릴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의 목격자가 되면서 흑인들의 삶과 여전히 그 삶에 함께하는 차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책을 읽고 나서, 그래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이 왜 폭동으로 귀결되는지 희미하게나마 이해가 되었다.

저자인 앤지 토머스는 데뷔작인 이 책 『당신이 남긴 증오』로 윌리엄 모리스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가 됐다. 이 책은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토대로 쓰였다. 그녀는 마약 판매와 총기 사건을 보면서 자랐지만 항상 작가를 꿈꿨다. "6살 때, 공원에서 두 명의 마약상이 총격전을 벌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서부영화 속 장면 같았죠. 다음 날 엄마가 저를 도서관에 데려가셨어요. 그날 눈앞에서 본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여전한 오스카 그랜트, 조지 플로이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지금은 21세기다. 하지만 2018년 미국 어린이도서 관협회(ALSC)는 문학상인 '로라 잉겔스 와일더 상'의 이름을 '어린이 문학유산 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녀의 작품 중 흑인 및 미국 인디언 원주민을 기술한 부분에서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21세기는 21세기인 것인가.

이 숙 현 편집부장

현장실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 지난 7월1일부터 실습을 진행한 동국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김 지 우

동국대 법학과

현장실습에 처음 투입되기 전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글로만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조금 들뜨기도 했었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은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이 걱정되기도 하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상담소에 출근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에는 기대보다는 걱정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학기 중에 가족법을 듣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걱정을 할 여유조차 없이 오후에 바로 전화상담 연수에 투입되어 실습이 진행되었다.

연수활동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든 비교적 잘해내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였지만 현장에 투입되니 방금 배운 내용마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행히도 선생님께서 함께 전화상담연수 중에 먼저 상담하시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어서 내담자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상담소 생활은 굉장히 다사다난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말이 엇나가고 목소리 톤이 정돈이 안 될 때도 있었다. 전화상담연수를 통해 많은 목소리의 내담자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모든 분들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 기억뿐 아니라 마음속에도 남아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는 바로 전화를 마치실 때 감사하다고 혹은 좋은 하루되라고 등의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

도 했지만, 가끔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진하게 남았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의 상담 참관도 매우 유익했다. 민원실에서 내담자분들을 직접 대면하기도 하며 선생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였다. 현장실습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 처음 전화를 받던 순간과 처음 법원에 간 날을 고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가 실습기간 내내 가장 설레면서 긴장했던 순간이기 때문이다. 실습기간인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2020년 7월 한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경험을 한 달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나는 이번 실습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가사 관련 법 지식들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었는데,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을 몸소 느낀 한 달이었던 같다.

나는 실습기간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혹은 서울가정법원 내에 있는 출장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렸다. 또한 업무가 바쁜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업무상 혹은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쭙보았을 때도 항상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나는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보고 배운 '정신력'이 '내가 앞으로 나의 진로인 변호사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내가 보고 배운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

면 다시 한 번 상담소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너무나 값진 가르침을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 이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소감문을 마친다.

박 선 영

동국대 법학과

법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법원, 재판, 소송 등은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었고 실제로는 그것을 해보지도, 참관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매우 멀게만 느껴지기만 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장실습에 지원하여 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가족법은 아직 수강하지 않았지만 2학기에 수강할 예정이어서 미리 실무를 체험하고 나면 전공 공부를 하는 것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동떨어진 느낌의 학습이 아닌 생생하고 아주 가까운 느낌의 학습을 해볼 첫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이 실습이 간절했던 것 같다. 이전부터 많은 선배들이 이곳을 추천해 주었기에 다른 곳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실습 지원을 했다. 가족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그렇게 나의 현장실습이 시작되었다.

전화상담연수 오리엔테이션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다들 ARS로 전화상담을 대체하고 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아직 ARS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할 사람 중에는 ARS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안 그래도 힘드신 와중에 전화상담까지 접근하기 어려워지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이 번뜩 들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 까 아직 그럴 정도의 법률적 지식은 없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부담감이 매우 컸지만 선생님들의 친

절한 지도와 도움 아래에서 많이 배우며 전화상담연수를 해나갈 수 있었다. 전화상담시 궁금했던 내용들은 틈틈이 상담소에서 나눠 준 가정법률사례집을 정독하며 답을 찾고, 모르는 법적인 내용은 후에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배웠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1층 현관에서 방문대장 기록 안내 및 접수 안내 업무도 하였는데, 실제로 상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가정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그만큼 상담위원 선생님들과 변호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한다는 것이 정말 큰일이라고 느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의 가정법률상담 출장상담실에서 상담 참관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각종 서류를 챙겨오셔서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내담자분과 그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신기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멀게 느껴졌던 법이 매우 가까이에서 쓰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생들과 상담위원 선생님들 사이에 접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법원 상담 참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유독 더 커졌다. 가족법에 대해 가장 가깝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담 참관인데 그 시간이 줄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상담소 동지교실에서 진행되는 강의 보조 진행도 해보고 동시에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관 기록을 담당했었는데 그래서 더욱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걸 정리하면서 속기형식을 익힐 수 있었다. 대법원 및 전국 법원의 주요 가사사건 판례를 수집하는 일도 했다. 이를 통해 많은 판례를 읽을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하여 상담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서 더욱 가족법을 공부할 수 있었다. 내담자분의 진술서 초안 작성 등 내담자분과 직접 마주하는 업무도 경험했는데 너무 보람되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가족법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선생님들의 업무 보조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관한 여러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청

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등을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이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등과 관련한 논문을 읽으며 현행법과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봄으로써 미리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처음 전화상담연수를 할 때는 이론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는 것도 설명하지 못하여, 자괴감이 들었으나 차츰 시간이 지나자 전화를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내담자분들이 전화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을 때는 뿌듯함도 느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처음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법이 생활 속에서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배워두면 유용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실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학설과 이론으로 배우던 법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법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동지교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분노'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화가 나도 항상 꺾고 눌러 참다가 한 번에 쏟아내고는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는 것과 건강한 가정과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이 최대한 신경 써주셔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가정법률을 이렇게 가까이서, 깊게 배울 수 있어서 이번 실습을 지원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실습을 바탕으로 법 분야의 진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전문지식을 사용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번 실습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실습이 끝나가는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를 많이 배려하고 신경 써주신 선생님들이다. 미숙한 우리에게 친절하게 전화상담을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알려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습이어서 일에 미숙해 힘들 때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현장실습을 선배들이 추천한 이유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나 또한 후배들에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의 현장실습을 적극 추천할 것이다.	실습기간 동안 상담위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너무나 유익했는데, 대화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해 로스쿨을 바로 가야 할지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너무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라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다.
..... 안 혜 지 동국대 법학과 연수활동을 오기 전부터 선배들에게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교에서 주로 배우고 있는 것이 법학이고 진로 또한 전공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상담소 현장실습에 지원하였다. 상담소 연수활동을 통해 이론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문제들을 부딪혀 보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해	7월 2일부터 28일까지 실습을 진행하면서 상담소에서 하는 일들과 상담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렵פות게 알 수 있었다. 나는 전화상담연수만 했는데도 퇴근 후에 진이 빠지는데 전화상담도 하시고 방문하시는 내담자들까지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의 업무강도를 보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현장실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주변에 이혼이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동안 사회에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저 막연하게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실습이 끝나가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이 뚜렷해진 것 같다. 아울러 가정폭력이나 이혼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분위기, 하는 업무 등 학교 수업만으로는 절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실습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학업에 지치다 보니 처음 법을 배울 때 가졌던 마음을 잊고 있었는데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 것 같다. 또한 실습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신감이 앞으로 살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 지 호

동국대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하기 전까지 저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막연히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을 희망하면서 법에 대한 편식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을 넓히기 위해 가족법 분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현장실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족법에 대해 공부하고, 내담자들의 사연을 듣고 실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즐겁고 보람되었습니다. 가족법은 사람에게 가장 가깝고 내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언제든 곤란함에 처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든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법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가족법을 수강하여 상담소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견고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현장실습을 하면서 저는 가족법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발의 입법안, 최근 판례동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문적인 부분,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진술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배움

을 토대로 주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처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

강원모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윤미, 김진아, 이남진,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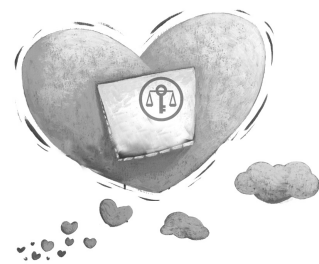
후 원

• 일반회원이 되신 분

임영호, 이주현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덕,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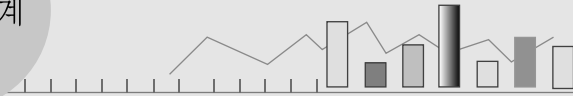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상담소, 구 지부들과 업무협약절차 진행 현재 17개 구 지부들과 구체적 논의 중

2019년 12월 31일자로 지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 지역에 법적 지원이 절실한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종전처럼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소는 구 지부들과 '전국업무협력기관'이란 명칭으로 업무협약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6월말로 총 17개 구 지부에서 업무협약 신청서를 보내왔으며, 상담소에서는 하반기에 '전국업무협력기관'의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논의·전달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신청한 구 지부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협약신청 구 지부 - 구리·남양주지부, 군산지부, 동해지부, 목포지부, 부천지부, 성남지부, 송도지부, 수원지부, 울산지부, 익산지부, 인천지부, 전주지부, 정읍지부, 제천시지부, 중구지부, 청주시지부, 평택·안성지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무자협의회 가져

7월 22일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윤경 가족상담본부장과 위탁지원부 안미경 차장이 본소를 방문하여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무자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는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업무 절차와 관련한 현안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본소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부모가족 및 실질적 양육자들에 대한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변호사, 유혜경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현장 실습」 실시

법학전문대학원 및 각 대학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 본소의 법률임상실습은 196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실습생들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 19 사태로 임시 중단되었던 대학생 현장실습을 재개하여 2020년 여름방학 동안 이화여자 대학교 및 동국대학교의 12명의 학생들이 2달(7월 1일 ~ 8월 31일)동안 4주에서 8주간의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각종 법률 및 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 출판홍보 사업을 통해 법률과 교육, 법개정 운동을 통한 성평등 및 가정의 민주화에 앞장서는 본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의 소외계층 특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법과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 등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소의 법률구조 사례와 절차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법을 통한 빈곤타파, 법의 생활화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법학도로서의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전화상담 연수, 법률구조 연수(법률구조의뢰서 작성,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연수), 교육프로그램(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법교육프로그램등) 보조 진행 연수, 상담소 홍보, 도서실 연수, 상담소 일반 업무 연수, 상담 참관 등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보고서 등의 과제를 제출하며, 각 프로그램마다 변호사 및 상담위원에게 슈퍼비전을 받게 된다. (관련 사진 2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청렴의 날로 지정

청렴 문구 공모전 등 개최

휴가철 앞두고 청렴 편지 발송

신규 직원 대상, 부패 방지, 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진행

본 상담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상시 구성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였다.

또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6월에는 청렴 문구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당선된 문구들을 영상물로 제작해 1층 모니터를 통해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다. 또한 7월에는 현수막형 배너 형태로도 제작해 건물 현관 입구, 각 층 엘리베이터 앞, 접수 대기실 등 상담소를 방문하는 이들의 이동 동선을 따라 여러 곳에 게시하였다. 아울러 상담소를 방문하는 외국인 내담자들을 고려해 청렴 문구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상담소 홈페이지에도 청렴 문구를 게시해 청렴 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7월 22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드리는 청렴 편지'를 발송하였다.

앞서 2020년 6월 26일 김진영 상담위원은 신규 직원(손



명진 변호사, 박슬기 변호사, 유혜리)들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용덕 변호사(전 대법관) 본소에 또 기부

김용덕 변호사(전 대법관)가 상담소 법률구조 사업의 운영후원금으로 일백만 원을 기부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순회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다른 부문도 점차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7.1.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전화상담)

- 조은정 상담위원

7.15.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전화상담)

- 김진영 상담위원

7.20. 강서지역자활센터-가족법및신용회복 교육

- 조은정 상담위원

7.22. 강서지역자활센터-가족법및신용회복 교육

- 조은정 상담위원

7.29 동국대학교 여름학기 현장체험 - 법률구조체험교육

- 조은정, 천다라 상담위원

(관련사진 2면)

대학생 현장실습 (12명)

●이화여자대학교 (4명 / 7.1.-8.31.)

김유민, 유채린, 최수현, 한지수

●동국대학교 (8명 / 7.1.-8.25.)

김지우, 남지호, 박선영, 안혜지, 김광수, 김도윤,
오채은, 장유진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손명진,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7월 1일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 사건에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였다. 24일에 법무부 법무심의 관실에서 주관하는 '상속권상실 TF회의'에 참석하였고, 28일에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시안마련연구 가족다양성 및 재생산영역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1일 대안언론사 닷페이스와 호주제폐지, 성과 본 결정에서의 부성원칙주의 문제점 및 법개정, 성과 본 변경 상담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였다. 14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3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청구 사건을 조정하였다.

2020년 7월 상담통계

총상담 6,533				
법률상담 (6,098)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1,224	4,742	124	6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249		69	117	

* 인터넷 정보 이용 23,216

2020년 7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533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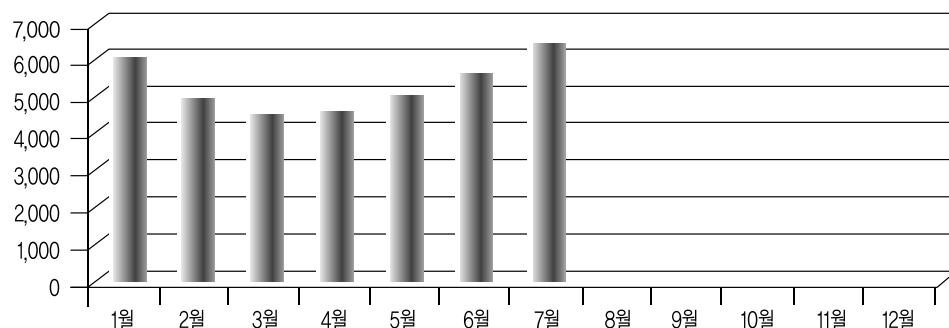
6,098건(93.3%), 화해조정 249건(3.8%), 소장 등 서류작성 69건(1.1%), 소송구조 117건(1.8%)이었다.

법률상담 6,09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6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4%→0.8%), 면접교섭권(2.4%→2.5%), 인지(0.9%→1.0%), 입양(0.7%→1.1%), 혼인무효·취소(0.5%→0.6%), 친양자(0.6%→0.7%), 성변경(0.9%→1.0%), 미성년후견(0.6%→0.9%), 가사절차(6.5%→9.6%), 가사기타(5.0%

→9.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0.1%→0.2%), 파산(1.9%→2.0%), 민사기타(0.5%→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5%→1.8%), 형사절차(0.3%→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6,09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24건(20.1%), 전화상담 4,742건(77.8%), 인터넷상담 124건(2.0%), 순회상담 6건(0.1%), 지상상담 2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무책임한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9-318

담당 : 채인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8세)은 상대방(남, 46세)과 2002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8세, 14세)을 두었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어린 사건본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다.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혼을 요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협박에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몇 년 동안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버텼다. 결국 2014년 7월 재판상 이혼하게 되었고, 당시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상대방이 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이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청구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다. 수급비와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생활하고는 있으나 사건본인들이 자라면서 양육비는 더욱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양육의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5. 25.)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년 6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잡은 가출과 외박으로 연락두절 된
아내와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322

담당 : 황민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1세)와 베트남 국적의 피고(여, 35세)는 2008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친구와의 만남을 이유로 잦은 외출, 외박을 하다 봉직 공장에서 근무하겠다고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2011년 가을경, 원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피고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가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의 위장결혼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벌금까지 납부해야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5.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 폭행을 피해
노숙생활을 한 아내의 이혼 청구**

법률구조 2019-362

담당 : 박재욱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66세)는 198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를 두었다. 신혼초부터 원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사건본인 출산 이후인 1984년 5월경부터 피고는 매일 음주 후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쳐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 있다. 시어머니도 지인들과 매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하였고, 견디기 힘들었던 원고는 5살인 딸을 데리고 나와 친정집에서 지냈다. 손녀를 데리고 가겠다며 친정집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는 결국 강제로 딸을 데려갔고, 원고는 친정집에 더 이상 머물기 어려워 노숙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시어머니가 또 다시 찾아와 폭언, 폭행을 할 것이 두려워서 혼인생활을 하던 지역에서 멀리 떠나 다른 지역을 전전하며 노숙하였다. 2019년 3월경, 영등포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원고는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도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영등포구 소재 여관에서 지내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5.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장기간 생활고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30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7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린나이에 일을 시작하였다. 군 제대 후에는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일하였으나 IMF사태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실직하였다. 이후 생활고로 가족들과 멀어지게 된 신청인은 건설현장, 양식장 등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5년경부터 극심한 통증의 허리디스크로 일용근로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부지런히 일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본인 능력으로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몇 차례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까지 하면서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하며 건설현장 일용근로를 하여 월 평균 80만원의 소득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저조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사이 대출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간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본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6. 2.)

채무자를 면책한다.

**장기간 생활고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42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6세)의 전배우자는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하며 생긴 대출로 다달이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막대하였다. 힘겹게 이자변제를 해나가던 중 추가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된 전배우자는 신탁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으로 신청인을 내세웠고, IMF가 발생하면서 폐업하였다. 이후 전배우자는 신탁 공부만 하였고, 신청인은 혼자 힘으로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전배우자와 잦은 가정불화가 생겨 결국 2006년경 이혼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신탁에서 온 독촉장을 보고서 주채무자였던 전배우자가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으로는 소득이 미미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었고 늘어나는 이자를 지켜봐야만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평균 70만원의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은 보증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65

담당 : 김상근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1세)은 2003년경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업종을 변경하며 운영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변제해야 할 부담감은 더욱 커져가던 중 신청인은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사업실패와 불의의 사고를 겪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지만 신청인은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2018년경 다시 한 번 교통사고를 당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출소 후 지급불능상태로 구직이

어렵던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지체장애 5급이며,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7. 8.)
채무자를 면책한다.

친가족처럼 위탁아동을 양육하던 위탁모의 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변경



법률구조 2020-79

담당 : 최정희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변경

내용 : 사건본인(남, 8세)은 불상의 미혼모에 의하여 출생하여 아동양육시설 맡겨져 생활하였다. 후견인후보자(여, 37세)는 사건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건본인이 4세 무렵부터 사건본인을 담당하게 되었다. 시설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을 돌보던 후견인후보자는 명절이나 휴가 시에 사건본인을 집으로 데려가 가족들과 친분을 쌓게 도왔다. 사건본인이 입양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과 상의하여 후견인후보자의 모인 청구인(여, 64세)을 위탁모로 가정위탁보호를 지정받아 사건본인이 6세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시설 부적응 및 심리적 불안 문제 등으로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했고, 후견인후보자와 함께 치료센터를 다니고 있다. 사건본인은 후견인후보자를 엄마로 따르며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본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양육수당은 양육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후견인후보자는 사건본인을 위해 통장을 가입해두고, 예금과 적금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전 아동양육시설의 장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로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인 서류 발급과 여권 발급, 병원 진료, 학교 업무 등의 법적 제약에 어려

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미성년후견인 변경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광주가정법원 2020. 5. 7.)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에서 후견인후보자로 변경한다.
2. 미성년후견인은 2020. 8.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0. 4. 30., 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0. 8. 31.까지 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친족후견인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1. 5. 31.을 시작으로 매년 5. 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5. 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0-88

담당 : 김옥선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1세)와 피고(남, 23세)는 2018년 8월경 사건본인 출산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9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여, 2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피고 명의의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도박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 등의 사실을 숨겼고, 또한 원고가 출산 후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는 동안 성매매 업소를 다녀오고 불법도박등을 하였다.

결국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피고를 불법도박을 이유로 현병대에 신고하였는데, 도박한 액수만 약 2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정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심지어 피고는 야구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며 원고를 속이고 원고 명의로 수차례 대출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원고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원고와 사건본인을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였다. 피고에게 야구사업 물품대금,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 가량을 빌려 준 원고의 친언니는 참다못해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019년 5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어린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며 집안 기물을 파손하는 등 원고와 사건본인을 위협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다가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식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긴급생활비와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2021.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비롯한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연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 일체 포함)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이 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0. 5.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회 이상 사건본인과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1박 2일도 가능함).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과거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부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결정

법률구조 2020-268

담당 : 강은현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53세)는 채무자(남, 52세)와 법률상 혼인하여 사건본인(남, 19세)을 두었으나 채무자의 가출 및 외도로 인하여 2006년 6월 협의이혼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채무자는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공증하였다. 채무자는 위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2-3년간 양육비를 불규칙하게 지급하다가 2011년 말부터는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채권자는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로부터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기가 몹시 힘겨워졌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전화 및 우편 등을 일체 받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는 2018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8노단0000을 통하여 7천만 원의 과거양육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는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6. 18.)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